#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44

발의연월일: 2020. 7. 13.

발 의 자:김경협·이형석·박성준

홍성국 · 강민정 · 박영순

이성만 · 용혜인 · 조오섭

김경만 · 김정호 · 양정숙

오영환 • 양이원영 • 류호정

김진애 · 서영석 의원

(17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투자공사는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외환보유액 등의 자산을 위탁받아 주식·채권·외환·부동산 등 다양한 국제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우리나라 대표 해외투자기관으로서 2020년 5월 기준 운용자산규모는 1,536억 달러에 이르고 있음.

그런데 한국투자공사가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일으킨 옥시와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사건을 일으킨 폭스바겐, 대일항쟁기 우리국민을 강제동원한 기록이 있는 이른바 전범기업과 같은 비윤리적 기업에 대하여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하였던 것을 계기로 한국투자공사가 국부펀드로서 수익률만을 추구하는 일반 자산운용사와는 달리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함께 고려하는 '사회적 책임투자'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사회적 책임투자'는 2005년에 UN에서 6가지 투자 원칙을 천명한 이후 서명을 통해 세계 각국 및 기업에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고, 국내에서는 국민연금이 법개정을 통해 2015년부터 도입하고 있으며, 해외 국부펀드 중에서 노르웨이의 정부연기금(GPFG; Government Pension Fund Global)이 도입하고 있음.

한국투자공사는 2019년 투자정책서 개정과 내규 제정을 통해 '한국투자공사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원칙)'을 수립·공표하였는바, 이를 안착시키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1조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투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전 단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자산의 운용용도 및 운용	제31조(자산의 운용용도 및 운용
방식 등) ① (생 략)	방식 등) ①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u>수 있다.</u>
<u>②</u> · <u>③</u> (생 략)	<u>③</u> ・ <u>④</u> (현행 제2항 및 제3항
	과 같음)
<u>④</u> <u>제3항</u> 의 규정에 불구하고	<u>⑤</u> 제4항
공사는 일시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산을 원	
화표시 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	
다. 이 경우 금융기관에의 예	
치, 국공채 매입 등 안정적·중	
립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u>⑤</u> (생 략)	<u>⑥</u> (현행 제5항과 같음)
제3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3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공사가 제31조제1항 각호	②
및 같은 조 <u>제2항</u> 에 따른 거래	<u>শা3</u> ন্ট
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등	

록·신고 등을 하거나 받은 것 으로 본다.

1. ~ 4. (생 략)

③ ~ ⑤ (생 략)

\_\_\_\_\_

1. ~ 4.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